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
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보건소 의약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45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고령화와 저출산,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혈액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유공패(장)을 받은 헌혈구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내용 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 신설)
- 나.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표창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, 제4조의8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헌혈자 수와 헌혈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의된 안건으로

[단위: 천명, %]

	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총인구		50,801	51,446	51,635	51,849	51,829	51,639
면 헌혈인구	계	2,866	2,929	2,883	2,791	2,611	2,604
	- 헌혈률	5.6	5.7	5.6	5.4	5.0	5.0
	단체헌혈	953	954	900	874	669	660
	- 단체비중	33.3	32.6	31.2	31.3	25.2	24.9
	개인헌혈	1,913	1,975	1,983	1,916	1,953	1,955
	- 개인비중	66.7	67.4	68.8	68.7	74.8	75.1

출처: 대한적십자사「혈역사업통계연보」

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패을 받은 사람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안 제6조의2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참고로 대한적십자의 헌혈유공패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수여되는 것으로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(30회), 금장(50회), 명예장(100회), 명예대장(200회), 최고 명예대장(300회)이 있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헌혈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혈액관리법

[시행 2023. 6. 22.] [법률 제1862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[중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<2020. 12. 29.>]

제4조의8(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1.]